

# 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24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9. 11. 24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9. 11. 24

라. 상정일자 : 2009. 12. 17 (제178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기획관리실장 정병일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철우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공사·공단에 설치됨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「인천광역시공사·공단 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#### ○ 동 조례안은

- 지방공사·공단 임원 임면은 '09.10.2 시행된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 현행 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해당 공사·공단에서 설치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게 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임.
- 사장(이사장)·이사·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게 되는 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※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을 통해 임명하던 것을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(당연직 제외)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쳐 임명

#### ▶ 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 및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내용

구 분	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(7명)	임원추천위원회(7명)
구 성	○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○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○ 당해 공사·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	○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○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○ 당해 공사·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
운 영	○ 조례로 규정(시 운영)	○ 정관으로 규정(각 공사공단)
기 능	○ 사장 후보의 추천	○ 사장 외의 이사 및 감사 후보의 추천

#### ▶ 6개 공사·공단 이사 및 감사현황

구 분	정수범위 (이사 및 감사)	계	사장 (이사장)	상임이사	비상임이사		감 사
					당연직	선임직	
교 통 공 사	총 8명 이내 (정관 제28조 제1항)	7명	1	1	2	2	1
인 천 메 트 로	총 12명 이내 (정관 제10조 제1항)	10명	1	2	2	4	1
시 설 관 리 공 단	총 8명 (정관 제2조 제1항)	8명	1	1	2	3	1
도 시 개 발 공 사	총 12명 이내 (정관 제10조 제1항)	10명	1	3	2	3	1
관 광 공 사	총 12명 이내 (정관 제10조 제1항)	8명	1	1	2	3	1
환 경 공 단	총 8명 (정관 제10조 제1항)	8명	1	1	2	3	1

▶ 공사·공단의 임원의 임면 및 임기

구 분	개 정 전	개 정 후
임 면	○ 사장 및 감사 : 시장 ○ 이사 : 사장 (시장의 사전 승인)	○ 사장·감사·비상임이사 : 시장 ○ 상임이사 : 사장
임 기	○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	○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연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윤지상, 김소림, 지정구, 이상철, 조남휘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 (재석위원 전원찬성 : 5명)

7. 기타사항

○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 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공사·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